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의 개선방안』
공청회

2017. 4. 21.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의 개선방안」 공청회

2017.4.21.(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1 개요

□ 행사명: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의 개선방안」공청회
□ 주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참석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 및 24개교 원장, 좌장 (송오식 원장), 발제자 (김인재 원장), 토론자 등
□ 일시:	2017년 4월 21일(금) 15:00 ~ 17:30
□ 장소: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601호 국제회의실

2 일정표

시 간	일 정	비 고
15:00~15:20 (20m)	[개회식] ○ 내빈소개: 내빈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 ○ 개회사: 이형규 이사장 (법전원협의회) ○ 축 사: 정병석 총장 (전남대학교)	·사회: 김명기 국장 (법전원협의회)
15:20~17:00 (1h 40m)	[주제발표 및 토론] ■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의 개선방안』 (발표) 김인재 원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박철 변호사 (범무법인 법가) 임순현 기자 (연합뉴스) 홍석모 원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좌장: 송오식 원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00~17:30 (30m)	[종합토론]	

❖ 개 회 사 ❖



안녕하십니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형규입니다.

2014년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전남대학교에서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남대학교에서 로스쿨 원장단 회의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전남대학교 정병석 총장님과 모든 준비를 잘 해주신 송오식 법학전문대학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전국 각지에서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남대학교까지 오신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의 사회자 및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제6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졌고, 바로 지난 주 법무부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합격자 발표 전 성명서를 통해 법전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응시자 대비 60% 수준의 합격률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1,600명(51.44%)만이 합격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현재 정원제 합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 추이를 보면 1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87.15%였지만, 그 후 점점 감소하여 6회 합격률은 51.44%로 하락하였습니다. 매년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수는 소수만 증가한 데 대하여 응시인원은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로스쿨생들이 시험과목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 선택과목 및 특성화 과목은 정상적인 수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로스쿨 도입 취지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배운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변호사시험은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합격률이 낮아짐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변호사시험 과목 중 선택과목이라고 불리는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변호사시험을 제6회까지 시행한 결과 특히 선택과목의 시험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이 기본 과목 외에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라는 등 7개의 선택과목 중 한 과목을 택하여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과목 간에는 난이도, 출제범위와 학습분량 및 응시자 수 등 현저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형평성의 시비가 있으며, 사회적 수요에 따른 법률전문가의 양성과는 동떨어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택과목 중에는 아예 강의를 듣지 않고도 며칠만 공부하면 변호사시험합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과목 평균 응시자 현황을 보면, 국제거래법이 40.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환경법 23.8%, 노동법 17.5%, 경제법 9.9%, 국제법 3.3%, 지적재산권법 3.1%, 조세법 2.1% 순입니다. 이와 같이 응시자의 비율만 보아도 사회적 수요와 전혀 관계 없이 일부 과목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걸맞고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선택과목에 대한 시험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공청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공청회에서 도출되는 의견들이 앞으로의 변호사시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장들도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는 로스쿨 교육이 정착되도록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 2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형규

❖ 축 사 ❖



4월 교정의 신록이 아름답고 활기가 넘칩니다. 이처럼 좋은 계절에 전남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열게 되어 기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과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형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법률가 양성과 보편적 법률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이른바 ‘로스쿨 제도’가 출범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법개혁 차원에서 오랜 논의과정을 거쳐 도입된 로스쿨 제도는 사회적 다원화에 부응하는 법조 실무인력 양성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조인 양성의 유일한 요람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저는 로스쿨 제도 도입 과정에 누구보다 깊숙이 참여하였습니다. 저의 대학교수 생활 가운데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로스쿨 추진위원회 활동입니다.

사법고시라는 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교육을 통해 양성한다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근본 취지입니다. 국민들이 보다 저

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나아가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선진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훨씬 유리한 제도라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직도 거쳐야 할 힘든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대표단들이 귀한 시간을 내어 한 자리에 모인 뜻도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함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 공청회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필수 관문입니다.

우리나라 법학교육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수준 높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변호사시험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보다 굳건하게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공청회 개최를 축하하며, 로스쿨 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7. 4. 21

전남대학교 총장 정병석

❖ 목 차 ❖

발 표	김인재 원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토 론	박 철 변호사 (법무법인 법가)	31
토 론	임순현 기자 (연합뉴스 사회부)	39
토 론	홍석모 원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5
종합토론		51

발 표

김인재 원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방안*

김인재 원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목 차 >

- I. 머리말
- II.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
 - 1. 법학전문대학원 :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기관
 - 2. 변호사시험 : 직업윤리와 법률사무 수행능력 검정시험(자격시험)
- III.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시험과 교육 실태
 - 1. 변호사시험 과목 관련 법령
 - 2.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시험 실태
 - 3. 법전원 전문법률 과목의 교육 실태
 - 4. 소결
- IV.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방안
 - 1. 기본방향 :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와 시험방법의 간소화
 - 2. 대안 : 전문법률 과목에 대한 학점이수제 도입
 - 3. 별론 : 기본법률 과목의 표준교육과정 제시
- V. 맺는말

* 이 발표문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한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2014.12.5.)에서 발표한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 - 선택과목” 발표문을 수정·보완하였다.

I. 머리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전원법”이라 한다)¹⁾과 「변호사시험법」(이하 “변시법”이라 한다)²⁾의 제정·시행의 제정·시행에 따라,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지 9년째이고, 여섯 차례의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어 9천여 명의 변호사가 배출되었다.³⁾ 새롭게 도입·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해서는 도입·시행 초기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다. 특히 변호사시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2017년에 폐지되는 사법시험제도의 존속 여부⁴⁾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라 한다)과 변호사시험에 대하여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법전원의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의 상호관계에 관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변호사시험은 법전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법전원은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법전원법 제1조)에 그 설치 목적이 있고, 변호사시험은 법전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직업윤리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변시법 제1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전원의 교육과정은 직업윤리와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교육할 수 있게 편제·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역으로 직업윤리와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의 내용과 방법이 법전원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섯 차례의 변호사시험을 치르면서 법전원의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 교육과정이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검정하는 데에 적절하게 편제·운영되고 있는지, 변호사시험이 법전원의 교육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1) 제정 2007.7.27. 법률 제8544호, 시행 2007.9.28.

2) 제정 2009.5.28. 법률 제9747호, 시행 2009.8.29.

3) 제1회(2012년) 1,451명, 제2회(2013년) 1,538명, 제3회(2014년) 1,550명, 제4회(2015년) 1565명, 제5회(2016년) 1,581명, 제6회(2017년), 1,600명.

4) 제19대 국회에는 ‘사법시험제도의 존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오신환의원(2015.6.8.), 김학용의원(2014.12.16.), 김용남의원(2014.9.18.), 노철래의원(2014.4.7.), 함진규의원(2014.3.7.) 등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변호사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박영선의원(2014.1.23.)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었다. 이 법안들은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으나, 제20대 국회에서 오신환의원(2016.5.31.), 함진규의원(2016.6.21.) 및 김학용의원(2016.6.23.)이 사법시험제도의 존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한편, 변호사시험의 과목은 공법·민사법·형사법 및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의 과목(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변시법 제9조 제1항).⁵⁾ 시험과목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때, 이른바 ‘기본법률 과목’에 대해서는 ‘시험의 실시’를 당연한 전제로 하여 주로 시험의 방법, 출제범위 및 출제기준 등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과 관련해서는 그 논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진다. 하나는 기본법률 과목과 마찬가지로 선택과목 시험의 실시를 전제로 시험의 과목, 방법, 출제범위 및 출제기준 등에 관하여 검토할 수도 있으며, 또 하나는 그와 달리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과목 시험의 실시 여부 자체를 검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자의 입장에서의 논의보다는 후자의 입장에서의 논의가 더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선택과목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의 ‘충실한 교육’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서는 법전원의 설치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과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특히 전문법률 과목에 대한 교육의 정상화, 즉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방안’을 간단히 검토한다.

II.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

1. 법학전문대학원 :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기관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전원법 제2조), 나아가 “개방되어 가는 법률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갖춘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을 양성”⁶⁾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5) 시험과목 중 공법·민사법·형사법 과목을 ‘기본법률 과목’이라 하고,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을 ‘전문법률 과목’이라 부르기로 한다. ‘전문법률 과목’이란 정확하게는 변시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7개의 과목만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기본법률 과목’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모든 과목을 ‘전문법률 과목’이라 한다.

6)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2004.12.31.

통하여 법률가를 양성하던 기존의 방식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이는 ‘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선발’이 아니라,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법전원에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사람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이다. 법전원제도의 도입으로 ‘시험을 통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률가 양성제도의 중심축이 옮겨졌다.

이에 따라 법전원법과 동법시행령은 법전원에서 법조인 양성을 위한 ‘충실한 교육’이 이루지게 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전임교원 대 학생 비율,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중 실무경력교원 비율, 법학도서관·모의법정·세미나실 등의 교육시설,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필수 개설 교과목의 지정, 특성화 및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 외국어 강좌 개설 등을 설치인가기준 및 주기적인 평가기준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법전원은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제1항)는 규정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효율적인 수업, 엄정한 학사관리, 적절하고 충실한 실무과목 운영, 국제화 및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이행하고 있다.⁷⁾

다만 이와 같은 장치들은 ‘충실한 교육’을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법전원 차원에서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충실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와 학생들의 노력과 이를 검정하는 변호사시험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2. 변호사시험 : 직업윤리와 법률사무 수행능력 검정시험(자격시험)

변시법은 제1조에서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또 동법 제2조는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도록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법전원의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을 위한 일련의 체계적 과정을 이루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전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에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

7)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2011년 개정판)」, 2011.11;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기 평가기준」, 2014.11 참조.

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시행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⁸⁾ 즉, 기존의 사법시험과는 달리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시험’은 그 ‘교육’을 최소한의 형태로 확인하는 절차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법전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변호사시험의 시행을 위하여 변시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시법은 시험의 방법(제8조), 시험과목(제9조) 및 시험의 합격 결정(제10조)의 규정을 통해서 과거 사법시험과 같은 선발시험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변시법 제정 당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⁹⁾ 대표적으로 첫째, 시험방법(제8조)와 관련하여 ‘선택형’(객관식)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 둘째, 시험과목(제9조)과 관련하여 기본과목 외에 선택과목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시험과목과 출제범위가 적정한가 등이 지적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시험의 합격결정(제10조)과 관련하여 합격률 문제였다.

8) 법무부는 2009년 3월에 펴낸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선진 법률문화를 향한 도약입니다」라는 책자에서, 법무부는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 경력을 가진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경쟁력있는 법률가를 양성합니다. 로스쿨에서 충실히 교육을 받는다면 누구나 무난히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고 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경쟁력있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을 로스쿨 도입 이유로 밝히고, 또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은 로스쿨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5쪽)

9) 김창록·김종철·이재협,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연구」, 2009.4 참조. 2009년 변호사법시행령(안)에 대하여 교육부도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에 비하여 시험부담이 더 크다는 우려가 있음에 따라 법전원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법전원제도가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란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과도한 시험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 요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Ⅲ.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시험과 교육 실태

1. 변호사시험 과목 관련 법령

현행 변호사시험은 ‘공법(헌법과 행정법 분야 과목)’,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과목)’, ‘형사법(형법과 형사소송법 분야 과목)’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전문법률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한 1개 과목(선택과목)을 시험과목으로 규정하고(변시법 제9조 제1항), 아래 <표 1>과 같이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종류와 그 출제범위를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과 별표 2). 전문법률 과목의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동법 제9조 제4항).

한편, 기본법률 과목에 대해서는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실시하고(동법 제8조 제1항), 전문법률 과목에 대해서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동법 제8조 제3항).

<표 1> 변호사시험 선택과목과 출제범위 (변시법 시행령 제7조)

과 목	출 제 범 위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변시법 제정 당시 변호사시험에서 법조윤리 과목과 기본법률 과목 외에 왜 전문법률 과목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2008.10.20.)이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변호

사시험법안」(2009.4.23.)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마. 시험과목(안 제9조)’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을 뿐이었다.

- (1)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은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으로 하고, 논술형 필기시험 과목은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과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하며,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2) 인접한 복수의 법률분야를 통합한 시험과목을 마련함으로써 실무와 연계되고 특성화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내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도 포함함으로써 응시자가 관심 있는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임.

한편, 법무부는 “로스쿨에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종합적으로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복수의 법률분야에 대하여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특성화된 법률분야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기 때문에, 변호사시험과목은 이러한 로스쿨의 교육특성을 반영하고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전문지식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기본과목’은 개개의 법과목별로 평가하던 기존 사법시험과 달리 민법과 민사소송법처럼 실무상 유기적으로 연계된 영역을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평가하고, ‘선택과목’도 경제관련법, IT법, 환경법 등 로스쿨에서 특성화분야로 지정된 전문법률분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홍보책자에서 언급하고 있다.¹⁰⁾

변호사시험법안의 주요 내용 설명과 법무부의 책자를 통해서 볼 때, 법전원에서의 특성화 교육 내용을 검정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에 전문법률 과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¹¹⁾

전문법률 과목의 시험 실시와 시행령에 의한 특정 과목의 지정에 대해서는 변시법과 시행령의 제정 당시에도 많은 비판이 있었다. 논술형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은 필요치 않으며,¹²⁾ 부득이 선택과목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극소수의

10) 법무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선진 법률문화를 향한 도약입니다」, 2009.3 참조.

11) “특성화란 기본적인 것은 공통으로 가르치되 전문적인 것은 각각 다양하게 가르치라는 요청이므로 특성화 과목을 국가시험으로 치르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특성화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장재욱,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의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관한 공청회」 주제발표, 법무부, 2010.11.25., 34쪽에서 재인용)

과목으로 한정할 경우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과 한정된 선택과목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과목들은 등한시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므로, 법전원 특성화 과목들은 대폭 선택과목으로 지정하거나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의 성적은 법전원 해당과목 성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¹³⁾ 등이 있었다. 25개 법전원의 특성화분야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전문법률분야 과목만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특성화’ 취지에도 반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2.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시험 실태

변시법 제8조 제3항과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동안 시행된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은 다음 <표 2>¹⁴⁾와 같다.

<표 2> 제1~5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별 응시자/합격자 비율

구 분		전 체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1회	응시자 (비율)	1,665 (100)	94 (5.65)	413 (24.80)	516 (30.99)	59 (3.54)	82 (4.92)	228 (13.69)	273 (16.40)
	합격자 (합격률)	1,451 (87.15)	71 (75.53)	346 (83.78)	453 (87.79)	54 (91.53)	77 (93.90)	210 (92.11)	240 (87.91)
2회	응시자 (비율)	2,046 (100)	59 (2.88)	805 (39.35)	405 (19.79)	45 (2.20)	88 (4.30)	285 (13.93)	359 (17.55)
	합격자 (합격률)	1,538 (75.17)	38 (64.41)	584 (72.55)	296 (73.09)	36 (80.00)	76 (86.36)	222 (77.89)	286 (79.67)
3회	응시자 (비율)	2,292 (100)	63 (2.75)	1,032 (45.03)	359 (15.66)	33 (1.44)	61 (2.66)	225 (9.82)	519 (22.64)
	합격자 (합격률)	1,550 (67.63)	37 (58.73)	669 (64.83)	240 (66.85)	25 (75.76)	41 (67.21)	163 (72.44)	375 (72.25)
4회	응시자 (비율)	2,561 (100)	64 (2.50)	1,116 (43.58)	319 (12.45)	49 (1.91)	52 (2.03)	192 (7.50)	769 (30.03)
	합격자 (합격률)	1,565 (61.10)	35 (54.68)	631 (56.54)	197 (61.75)	32 (65.30)	32 (61.53)	131 (68.22)	507 (65.92)
5회	응시자 (비율)	2,864 (100)	95 (3.32)	1,240 (43.30)	405 (14.14)	57 (1.99)	73 (2.55)	199 (6.95)	795 (27.76)
	합격자 (합격률)	1,581 (55.20)	46 (48.42)	625 (50.40)	248 (61.23)	38 (66.67)	44 (60.27)	111 (55.78)	469 (58.99)

12) 김창록·김종철·이재협,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연구」, 2009.4, 12쪽.

1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2009.

14) 연도별 변호사시험의 응시자와 합격자에 관한 통계는,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http://www.moj.go.kr/HP/lawyer/main/>)의 ‘자료실/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를 보면, 7개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중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과목의 응시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제4회와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두 과목의 응시자가 전체 응시자의 73.61%와 71.06%를 점하고 있다. 수험생 10명 중 7명 이상이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과목을 선택하였다는 결과가 나온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도 많은 응시자가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과목을 선택하였지만 그 비율의 합은 41.2% 정도였다. 제1회 시험에서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과목의 비율은 각각 노동법 과목보다도 낮았다. 이 두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응시자 비율이 시험 횟수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 특히 제4회 시험에서 국제법, 조세법 및 지적재산권법 과목의 응시비율은 2~3%를 점하고 있을 뿐이다.

학생들이 7개의 선택과목 중에서 왜 국제거래법과 환경법을 많이 선택하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현대사회의 전문적 법률분야로서 국제거래법과 환경법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 또 이들 분야에서 법조인의 역할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과목들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70% 이상의 수험생들이 이 두 과목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의문이 있다. 이 두 과목에 비하여 국제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및 경제법 과목이 전문적 법률분야의 과목으로서의 중요성과 장래 전망이 그렇게 낮다고만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모든 시험이란 게 그렇듯이 시험은 일단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준다. ‘자격시험’이 아닌 ‘경쟁선발시험’에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시험합격률이 계속 하락하는 시험, 즉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시험에서 조금이라도 학습·수험 부담이 적은 과목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이른바 기본법률 과목의 학습량도 매우 많다고 부담을 느끼는 학생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학생들만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변호사시험제도의 문제, 자격시험이 아닌 사실상 경쟁선발시험으로 운영되는 변호사시험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 법전원 전문법률 과목의 교육 실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하락, 기본법률 과목의 과중한 학습·수험 부담 등은 학생들의 전문법률 과목의 수강 실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법전원에서 특성화분야 과목, 변시 선택과목 및 기타 전문법률 과목의 개설 및 수강 실태는 이 글의 말미에 첨부된 <표 3>¹⁵⁾과 같다.

15) <표 3>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14년 3월에 각 법전원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2012학년도 1

<표 3>을 통해서 볼 때, 입학정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 전문법률 과목의 개설 수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다만, 입학정원이 많은 법전문원일수록 수강인원이 많으며, 폐강과목도 적다. 공통적인 것은 일부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수강인원이 극소수인 과목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법과대학과 비교했을 때 학생의 정원이 대폭 감소했지만 개설과목은 대폭 늘어났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본과목의 수강에 치중하기 때문에 전문법률 과목은 수강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ㄱ법전문원의 경우(입학정원 150명) 학생 1인당 연평균 2.26과목, 한 학기에 한 과목 정도 수강하고, ㄴ법전문원(입학정원 120명)의 경우 연평균 1.96과목, ㄷ법전문원(입학정원 120명)은 1.4과목, ㄹ법전문원(입학정원 70명)은 0.86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성화분야 과목, 외국어강의 과목을 포함한 전문법률 과목의 수강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

또 특성화분야 과목의 경우에 필수 또는 선택적 필수로 지정된 법전문원 또는 특성화분야가 변시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법전문원의 경우에 수강인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외국어강의 과목의 경우에 수강인원이 많은 과목과 극소수인 과목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다음, 법전문원에서 변시 선택과목의 개설 및 수강 실태를 보면 다음 <표 4>¹⁷⁾와 같다.

학기부터 2014학년도 2학기까지에 개설된 교과목표를 기초로, 2013학년도 2학기 및 2014학년도 1학기의 1년분의 개설과목과 수강인원 중 실무기초과목 및 변시 기본법률 과목 관련 교과목을 제외한 것이다. 대상 법전문원은 입학정원 규모를 고려하여 임의로 8개를 선택하였으며, 전문법률 과목에 해당 여부 판단에는 필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16) 실무기초과목, 기본법률 과목, 전문법률 과목 간의 수강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필자도 판단하기 어렵다. 학생들이 3년간 이수해야 할 90학점 중 실무기초과목 10학점과 기본법률 과목 60학점을 제외한 20학점 정도가 전문법률 과목, 특성화분야 과목 및 외국어강의 과목의 적절한 수강학점이지 않을까 싶다.

17) <표 4>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2014.12.5.)의 발표를 위하여 필자가 25개 법전문원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재구성하였다(19개 법전문원 회신). 개별 법전문원에 대하여 2014학년도 변시 선택과목, 특성화과목 및 기타 전문법률 과목의 개설 및 수강 현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다만, 개설된 교과목이 변시 선택과목인지, 특성화분야 과목인지 또는 전문법률 과목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구체적인 강의계획서를 보지 않은 한 교과목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자료로서의 의미는 약하다. 또한 학교에 따라 특성화분야 과목에 기본법률 과목(예를 들어, 공법1, 회사법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전문법률 과목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정확한 자료 집계가 되지 못하였다. <표 4>를 통해서 변시 선택과목과 특성화분야 과목의 수강실태에 대한 그 경향만을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표 4>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개설 및 수강 실태 (2014년도)

(과목수/수강인원)

학교 (정원)	국제법	국제 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 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계(과목 /인원)	특성화분야	과목/ 인원
A (40)	3/13	-	2/12	4/24	1/2	2/5	5/74	17/130	환경법	8/ 97
B (40)	2/16	-	4/45	1/4	3/28	1/11	2/28	13/132	부동산법	6/ 34
C (60)	3/24	-	3/26	2/37	2/28	1/16	2/29	13/160	글로벌기업법무	6/ 83
D(120)	3/21	3/41	4/81	4/26	8/74	2/24	1/17	25/284	국제법무	25/250
E (80)	6/23	1/41	4/56	1/7	4/17	1/0	2/19	19/163	국제상거래법	8/101
F(120)	3/44	2/14	3/72	2/30	5/30	2/12	1/34	15/236	해운·통상, 금융	20/130
G (40)	2/0	3/13	2/16	2/6	4/37	4/10	2/13	19/ 95	금융법	3/ 8
H(150)	4/93	2/34	3/77	1/24	1/14	4/99	1/12	16/353	공익인권, 기업 금융, 국제법무	28/382
I (50)	5/5	-	6/32	10/61	3/3	1/0	1/22	26/123	조세법	12/ 69
J (50)	-	1/28	3/9	4/17	4/34	2/12	2/11	16/111	중소기업법무	15/185
K(120)	4/71	2/79	2/32	2/19	2/23	2/40	1/22	15/286	공공거버넌스, 의료과학기술, 글로벌비즈니스	23/353
L (70)	4/28	2/26	3/17	2/12	-	1/9	1/22	13/114	공익, 인권	8/ 91
M (50)	2/7	4/33	4/21	5/30	9/52	4/6	2/2	30/151	물류법, 지적재산권법	10/101
N(120)	3/14	2/145	2/47	2/12	4/34	2/10	1/9	16/271	공익인권	13/121
O (40)	2/11	2/29	2/5	1/3	2/19	1/10	1/17	11/ 94	국제법무	14/116
P (50)	2/13	2/3	2/27	3/17	2/9	2/19	1/8	14/ 96	문화법	7/ 48
Q(100)	3/23	1/0	3/68	2/24	6/92	-	1/31	16/238	지재법	8/110
R (70)	2/5	3/20	2/18	-	4/75	2/26	2/29	15/173	BT/ICT/산업재산	9/112
S (50)	4/6	1/6	2/15	1/10	1/5	1/4	2/9	12/ 55	국제지역전문	44/254
1,420명	57/417	31/512	56/676	49/363	65/576	35/313	31/408	324/3,265		267/2,645
비율(%)	12.8	15.7	20.7	11.1	17.6	9.6	12.5	100		

* 변시 선택과목 및 특성화 분야 과목을 제외한 기타 전문법률 분야 과목의 개설 및 수강 현황은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조사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워 통계작성에서 제외하였음.

* 비교의 통일성을 위해 조사된 자료를 일부 수정하였음. 학교에 따라 기본법률 과목(공법/민사법/형사법 과목), 실무기초과목(필수), 영어강의(절대평가) 등이 특성화분야 과목에 포함된 경우에 이를 제외하였음.

<표 4>에서 볼 때, 대부분 교과목의 수강인원이 매우 소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해당 법전원의 특성화분야 또는 전임교원의 분포 등에 따라 특정 과목에 수강이 집중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강인원(누계)은 대부분 변시 선택과목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제4회 변시에서 응시자 비율이 2% 내외를 점하고 있는 국제법, 조세법 및 지재법의 경우에도 수강비율은 10%를 넘고 있다. 이는 이들 과목과 노동법, 경제법 과목이 ‘공부할 양’이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반대로 국제거래법과 환경법의 경우에 응시자 비율에 비하여 수강비율이 낮은 것은 그만큼 ‘공부할 양’이 적거나 학교에서 수강을 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도 각 과목 또는 학문분야의 중요성과 관계 없이 학생들의 시험·수업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변시 선택과목 간의 응시자 비율의 격차는 개별 과목의 성격이나 중요성의 문제보다는 학습·시험 부담의 차이에서 기인하지 않는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근본적인 이유는 점점 낮아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과 기본법률 과목의 수업·시험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오는 학생들의 선택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오히려 선택과목보다도 선택형, 논술형 및 기록형 시험방법으로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시험과목(3×7=21과목)으로 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제도에서 찾아야 한다. 몇 개의 전문법률 과목을 선정해서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 선택과목 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학생들에게 기본법률 과목의 시험부담이 거의 없다면, ‘공부할 양’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전문분야의 선택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법률 과목을 수강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위 <표 4>의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M법전원 제3기 졸업생의 3년간 수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아래 <표 5>이다. 참고로 M법전원은 물류법과 지적재산권법을 특성화분야로 정하고 있다.

<표 5> M대 제3기 졸업생 수강 현황 (45명)

분류	수강 인원	과목 수	과목명(수강인원)
실무기초	311	7	법조윤리(46), 법률정보의조사(45), 법문서의작성(45), 법조실무연습1(45), 법조실무연습2(45), 모의재판(55), 리걸클리닉(30)
법조실무	163	6	검찰실무1,2(31), 민사실무1(39), 민사실무2(40), 형사변호사실무(14), 형사재판실무(39)
공법 (163)	66	5	헌법1(46), 헌법2,3(8), 헌법소송법(10), 헌법연습(2)
	97	5	행정법1(54), 행정법2,3(12), 행정법연습(14), 행정소송실무(17)
민사법 (455)	221	8	민법1(52), 민법2(49), 민법3(43), 민법4(27), 민법연습1,2(26), 민사분쟁의이론과실무(15), 친족상속법(9)

		115	4	민사소송법1(51), 민사소송법2(37), 민사소송법연습(18), 민사집행법(9)
		119	5	상법총론(49), 상사결제법(8), 주식회사법(44), 기업법세미나(11), 기업법쟁점연습(7)
형사법 (177)		118	4	형법1(51), 형법2(46), 형법연습(17), 형법특강(4)
		59	3	형사소송법(50), 형사소송법연습(4), 형사증거의이론과실무(5)
특성화 (100)	물류법	52	9	물류와법(19), 물류법연습(3), 물류행정법(5), 물류시설계획운영(2), 국제물류분쟁해결법(영, 4), 항공물류론(6), 항공산업론(8), 항공서비스경영(2), 해운물류론(3)
	지재법	48	10	지재권개론(16), 저작권법(8), 특허법(5), 상표법(1), 지재법연습(2), 저작권법소송실무(1), 지재서비스와관리(2), 엔터테인먼트법(2), 지재법실무(영, 6), 지재라이센싱실무(영, 5)
선택 과목 (116)	국제법	49	8	국제법개론(2), 국제경제법(1), 국제법(영, 7), 국제법세미나(영, 3), 국제인권법(영, 9), 국제해양법(영, 11), 국제환경법(영, 3), 국제통상분쟁사례연구(영, 8)
	국제거래법	27	3	국제거래법(7), 국제사법(17), 유엔국제매매법(3)
	노동법	16	4	노동법1(7), 노동법2(5), 노동법연습(2), 사회보장법(2)
	조세법	16	5	조세법개론(6), 세법1(4), 세법2(3), 조세소송실무(2), 국제조세분쟁의이론과실무(1)
	경제법	7	2	경제법1(3), 경제법2(4)
	환경법	1	1	환경법(1)
전문법 률과목 (78)	공익인권	30	2	공익소송과소수자인권(27), 젠더법실무(3)
	기타	48	14	재산법개론(2), 소년범죄론(2), 자본시장법(4), 운송계약법(7), 금융거래법(1), 의료민사책임(4), 의료와형법(4), 소규모회사법(1), 보험법(2), 쟁점대법원판례(9), M&A이론과실무(1), ADR(대체분쟁해결)실무(3), 도산법이론과실무(7), 형사정책(1)
기초법 / 외국법 (89)	기초법	29	4	법철학(9), 서양법제사(12), 한국법제사(7), 통일법연구(1)
	외국법/ 외국어강 의	60	14	EU법1,2(7), 영미공법(1), 영미사법(6), 미국특허법제와실무(2), 미국형사법(13), 법률영어(2), 법률중국어(2), 중국기업법(3), 프랑스법(4), 독일법(4), 미국계약법(6), 미국이민법(7), 해외법조연구(3)
합계		1,652	123	

* 밑줄 친 과목은 필수 또는 선택적 필수 과목임.

<표 5>를 보면, 졸업자 45명이 3년간 1,652과목(명)을 수강함으로써, 1인당 36.7과목을 이수(재수강 포함)하였으며, 이는 학기당 6.1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 중 실무기초 311, 법조실무 163, 공법 163, 민사법 455 및 형사법 177과목(명)을 합산하면 1,269과목(명)으로 전체 이수과목의 76.8%(1인당 평균 28.2과목, 학기당 4.7과목)를 실무과목과 기본법률 과목의 수강에 할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실무과목과 기본법률 과목을 제외한 특성화분야, 변시 선택과목, 기초법, 외국법·외국어강의 및 기타 전문법률분야 과목은 383과목(명)을 수강하여, 전체 이수과목의 23.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수강인원과 비율은 변시 선택과목 103명(26.9%), 특성화과목 100명(26.1%), 기타 전문법률 과목 78명(20.3%), 기초법 29명(7.6%), 외국법·외국어강의 과목 116명(30.3%)이다(특성화, 변시 선택과목, 외국어강의 과목의 일부는 중복 계산됨). 여기서 기초법과 외국법·외국어강의 과목을 제외한 특성화분야, 변시 선택과목 및 기타 전문법률 과목은 238과목(명)으로, 3년간 1인당 5.3과목을 수강하였다. 한 학기에 한 과목 미만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변시 선택과목은 3년간 103명의 수강인원 중 국제법 3명(2.9%), 국제거래법 27명(26.2%), 노동법 16명(15.5%), 조세법 16명(15.5%), 지적재산권법 33명(32%)¹⁸⁾, 경제법 7명(6.8%) 및 환경법 1명(1%)이 수강하였다. 졸업자 45명이 실제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과목은 국제법 1명(2.2%), 국제거래법 27명(60%), 노동법 7명(15.6%), 조세법 4명(8.9%), 지적재산권법 3명(6.7%), 경제법 2명(4.4%) 및 환경법 1명(2.2%)이었다. 특정 과목의 수강자가 모두 특정 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서 국제법 과목에 응시한 학생들은 평균 3과목을, 노동법의 경우 2.3과목을, 조세법의 경우 4과목을, 경제법의 경우 3.5과목을, 환경법의 경우 1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에 비하여 국제거래법은 27명이 응시를 했는데, 3년간 수강인원도 27명으로 평균 1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와 같이 M법전원 제3기 졸업생 45명의 3년간 변시 선택과목의 수강실태와 과목별 응시 현황에 관한 통계에서 몇 가지 가정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거래법 과목의 경우에 졸업생 중 60%가 응시했는데도 수강비율은 26.2%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하여 지적재산권법 과목의 경우에는 수강비율이 32%임에도 불구하고 응시비율은 6.7%에 불과하다. 국제거래법의 경우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습량이 적다거나 수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하는 가정을 할 수 있고, 지적재산권법의 경우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습량이 많다거나 특성화분야로서 선택적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하는 가정을 할 수 있다.

18) M법전원은 특성화분야 과목인 ‘지적재산권개론’과 ‘물류와 법’ 과목을 선택적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결국 학생들의 입장에서 변시 선택과목을 결정할 때에 본인이 관심을 갖는 전문법률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경쟁률이 격화되는 변호사시험을 의식하여 학습량이 적거나 수업준비에 부담이 적은 전문법률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심지어 실무과목과 기본법률 과목 이외에는 전문법률 과목 및 특성화분야 과목보다는 학점을 취득하기 쉬운 과목 또는 절대평가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4. 소결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 결정과 기본법률 과목의 과도한 시험 부담으로 인한 변호사시험의 선발시험화와 그로 인한 법전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우려는 이미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결정과정에서 예견되었다.¹⁹⁾ 또 법전원 설치 5주년 토론회에서도 선택과목 시험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²⁰⁾

그 예견을 증명하듯이 학생들은 주로 기본법률 과목과 학점 취득이 용이한 절대평가 과목에 수강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법률 과목 중에서도 시험과목으로 지정된 선택과목에는 어느 정도 수강인원을 예상하였으나, 현재는 그것도 일부 과목에만 집중되거나 극소수의 수강인원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전문법률 과목의 파행적 교육은 2011년부터 도입된 ‘엄격한 상대평가제도’가 상당한 일조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특성화된 법전원의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법전원에서의 특성화분야의 교육 성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전문법률분야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보도록 하였다.

19) 장재욱,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의견”, 「변호사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관한 공청회」, 법무부, 2010.11.25., 34쪽. 장재욱교수의 지적을 현재형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시험과목에만 집중한다. 민사법, 형사법, 공법 등 일부 시험과목의 공부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시험에 직접 관련된 과목만을 이수하고, 전문화된 첨단과목 등 전문법률 분야의 교육을 외면하고, 또 국제화, 전문화 등 각 로스쿨별 특성화 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해진다. 이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이며 교육이념인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가 양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 “학생들은 교과서나 판례교재 등을 통한 학습보다 시험문제 풀이를 위한 수험형 학습에 치중하거나 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수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아닌 사법 시험 시절의 시험을 통한 선발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0) 정한중,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토론문”,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 국회의원 이춘석·참여연대 공동주최, 2013.6.24., 80~81쪽. 정한중교수는 “시험에 매몰된 학습으로 해당 선택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어렵고, 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선택 법률이 소외되고, 장기적으로 로스쿨의 특성화전략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양한 선택법률에 대한 탐색기회가 어렵고 오로지 해당 시험과목에만 공부하게 되는 폐단이 있으며, 선택과목 간 난이도 조절 실패로 선택과목 차이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단지 4회의 변호사시험을 치렀을 뿐인데, 법전원에서의 특성화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법률 과목의 교육이 형식화되거나 수강이 기피됨으로써, 변시 선택과목의 응시와 법전원의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응시자가 집중되는 특정 과목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택과목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문법률 과목의 시험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변호사시험제도의 취지를 ‘시험시장’이 배신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전원의 전문법률 과목의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변호사시험의 선택 과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법전원의 특성화분야를 강화하고 다양한 전문법률분야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그것을 변호사시험에서 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 있겠는가이다. 변시법 시행령 [별표 1]의 시험과목에 25개 법전원의 특성화분야 및 다양한 전문법률분야를 모두 포괄할 수 있겠는가이다. 구체적으로 각 과목 간에 학습과 수험 부담의 균형을 맞추는 전문법률분야의 시험과목의 선정이 가능하겠는가, 또 수 십 개의 시험과목의 관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결국 ‘시험’ 외의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IV.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와 시험방법의 간소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문법률 과목(선택과목)의 시험 실시는 당초부터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조인 양성제도를 전환하는 취지에 역행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여섯 차례의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그러한 예상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모든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정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몇 개 과목만을 시험과목으로 정함으로써 시험과목으로 선택되지 않은 전문법률 과목의 교육과정 운영을 파행적으로 만들었다. 또 시험과목으로 선정된 선택과목의 교육과정도 과목별 학습량에 따라 불균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변시 선택과목의 시험 실시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문법률 과목의 불충실한 교육 실태라는 문제만 야기하고 있다. 그렇

다면 전문법률 과목의 정상적 교육을 통한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변시 선택과목 시험의 개선방안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미 여러 사람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변시법 제8조 제3항과 제9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을 삭제하고, 제9조 제4항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변시에서 선택과목의 시험을 폐지하는 것에 동의한다.²¹⁾

한편, 특성화 분야를 포함하여 전문법률 과목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데에는 기본법률 과목의 수험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에도 그 원인이 있다. 법 제9조 제1항에는 현재 변호사시험 과목을 ‘4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실질을 보면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과목과 각각의 선택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방법을 조합하고 선택과목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22개 과목에 이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사법시험의 시험과목보다 그 수가 많다. 선택과목 시험 문제 이전에 학생들에게 과중한 학습·수험 부담을 지우고 있다. 따라서 선택과목의 시험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전문법률 과목의 정상적 교육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본법률 과목의 시험방법을 간소화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해줘야 전문법률 과목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택형 시험을 폐지하거나 또는 법조윤리 과목과 같이 별도의 검증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기록형 시험의 실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21) 전문법률 과목의 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1안) 변시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과목 외에 법전원에서 소정의 전문법률 과목의 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변호사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하거나(법 제9조 제2항 단서 신설), (2안) 시험과목이 아닌 전문법률 과목을 일정 학점(예, 10과목 30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합격결정의 최저요건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8조 개정)는 제안이 있었다.(장재욱,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의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관한 공청회 주제발표, 법무부, 2010.11.25., 35~36쪽 참조) 이 제안은 현행 소수의 선택과목의 시험은 그대로 두고, 추가적으로 전문법률 과목의 교육을 강화하는 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안은 선택과목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만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현행	개정안
<p>제8조(시험의 방법) ①시험은 <u>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u>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p> <p>②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4호의 <u>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u></p> <p>④ (생략)</p> <p>⑤ (생략)</p> <p>제9조(시험과목) ①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u>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u> <p>②제1항제4호에 따른 <u>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③ (생략)</p> <p>④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p>	<p>제8조(시험의 방법) ①시험은 <u>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u>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개정></p> <p>(선택형과 기록형 시험 폐지? - 별도 논의 요)</p> <p>②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한다.</p> <p>③ <삭제></p> <p>④ (생략)</p> <p>⑤ (생략)</p> <p>제9조(시험과목) ①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삭제> <p>② <삭제></p> <p>③ (생략)</p> <p>④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p>

참고로,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법전원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을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²²⁾,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 시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교수의 57%(173명 중 98명), 학생의 62%(1,686명 중 1,052명)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선택과목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분야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측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다수였고, 학생들은 여기에 “시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대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선택과목 시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수는 “법전원에서 수업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학생은 “추후 취업 등 진로선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설문”,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 법학전문대학원 현안관련 토론회, 2014.12.5., 159~178쪽 참조.

‘선택과목 시험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교수와 학생 모두 “법전원에서 관련 선택과목을 일정 학점 및 일정 성적 이상 이수한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냥 “법전원에서 수업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해도 될 것임”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 두 응답을 합친 비율은 교수 73%, 학생 76%였다.

2. 대안 : 전문법률 과목에 대한 학점이수제 도입

선택과목의 시험을 폐지하는 경우에 전문법률 과목의 정상적 교육 및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선택과목의 시험을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로 전환하여 시험부담을 줄이고 전문법률 분야에 대한 다양한 탐색 및 각자 전문적인 심화공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거나²³⁾,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에 대한 논술시험은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적 법률분야는 각 로스쿨의 특성화를 강화함으로써 충실한 교육을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²⁴⁾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²⁵⁾

발표자 또한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법률 과목을 분야별 또는 영역별로 유형화하여 법전원 3년 교육과정 중에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학위수여 요건 또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법률분야의 유형화와 교과목 지정

전문법률 과목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별’로 사회통념상 확립된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학점이수제 단위가 되는 전문법률분야를 유형화하여 과목군(群)을 만든다. 기존의 교육과정 중 기본법률 과목, 실무기초 과목 및 외국어/외국법 과목을 제외한 전문법률 과목들을 분야별로 유형화하는 것이다. 특정 과목이 복수의 전문법률분야 과목군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미 법전원 인가 당시에 정한 특성화분야 및 학교의 특성과 교수진의 구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문법률 분야를 유형화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학술연구용역

23) 정한중,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토론문”,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 국회의원 이춘석/참여연대 공동주최, 2013.6.24., 80~81쪽.

24) 김창록, “변호사 시험제도의 운영의 적절성”,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 주제발제, 국회의원 이춘석/참여연대 공동주최, 2013.6.24., 93~94쪽 참조.

25) 이와 관련하여 ‘엄격한 상대평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상대평가는 개인의 학업성취도와 무관하게 주변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적이 도출되는 구조이므로 이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할 변호사시험과 근본적으로 친하지 않은 제도이다.(정한중, 앞의 글, 81쪽 참조)

을 통하여 전문법률분야의 ‘유형화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국가가 법령으로 획일적으로 전문법률분야를 유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전문법률분야를 유형화할 때, 대한변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그러나 대한변협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에 관해서는, 등록할 수 있는 36개의 전문분야는 우리나라의 변호사시장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많으며²⁷⁾, 일부 전문분야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가령 민사법, 상사법 등), 지나치게 협소하다(가령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는 비판도 있다.

전문법률분야를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가는 현재 일부 법전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 또는 ‘전문과정’ 제도를 참고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법전원의 경우, 기업법무, 공공정책법무, 공익법무, 시민생활법무, 젠더법, 생명의료법을 법률수요별 전공과 특성화 전공으로 설계하고 있고, B법전원의 경우, 국제비지니스법무, 국제통상법무, 공익인권 전문과정, 분쟁해결 전문과정, 경제법 전문과정, 고용복지와 법 전문과정, 금융법 전문과정, 기업법무 전문과정을 특성화분야와 전문과정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각 법전원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된 전문법률분야에 포함될 교과목을 지정한다. 이 경우에 변호사시험의 기본법률 과목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한다. 어떤 법전원에서는 공법1, 형사소송법, 헌법실무연습, 검찰실무2, 상거래법, 회사법, 상법의기초, 회사법의기초이론, 유가증권법 등의 과목을 특성화분야의 과목으로 지정한 경우도 있다. 이들 교과목이 해당 법전원의 특성화분야에 필요한 교과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특성화’ 이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강해야 할 변호사시험의 기본법률 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성화분야 또는 전문법률분야 과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26)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009년 9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전문 변호사 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규정에 따라 변호사가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업무분야로 헌법재판, 민사법, 부동산관련법, 임대차관련법, 손해배상법, 가사법, 형사법, 상사법, 회사법, 해상법, 보험법, 행정법, 조세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증권법, 금융법, 국제거래법, 기업인수합병, 에너지법, 스포츠법, 엔터테인먼트법, 방송통신법, 환경법, IT법, 의료법, 도산법, 국제중재법, 무역법, 조선관련법, 건설법, 중재법, 등기사무 등 총 36개의 전문분야를 인정하고 있다(동 규정 제2조). 변호사는 자신이 전문분야를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오종근, 「전문변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 2012.8, 73쪽 참조.

27) 독일은 20개 전문분야 인정, 미국은 州마다 다르지만 대략 10-20개 전문분야 인정.(오종근, 앞의 보고서 참조)

(2) 전문법률분야의 최저 이수학점 설정

각 법전원에서 전문법률분야의 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중에서 최소한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학생들에게 1~2개의 전문법률분야를 선택해서 각 분야 당 12학점(3학점 4과목) 또는 그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3년간 총 이수학점 90학점과 실무기초, 법조실무 및 기본법률 과목의 이수 학점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될 것이다.

또, 전문법률분야 과목에서 일정 수의 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일정 등급의 학점 취득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B학점 또는 C+학점 이상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어느 정도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최저이수학점’ 및 ‘이수학점 등급’은 법령(또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전원협의회 규정 등)에 규정하도록 한다.

(3) 전문법률 과목의 학점이수를 학위수여 요건 또는 변호사시험 응시요건으로

이와 같이 해당 전문법률분야의 일정한 학점(예를 들어, 12학점)을 이수하여 일정한 학점 등급(B- 또는 C+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법률분야의 학점 이수증명을 성적표에 기재하게 한다. 또 법전원법(시행령 제13조 또는 신설) 또는 변시법(제5조)을 개정하여, 전문법률 과목의 최저 이수학점 및 학점등급의 취득을 학위수여 요건으로 하거나 변호사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한다. 법조윤리 과목의 수강과 시험합격을 변호사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하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또 전문법률분야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입법예고된(2014.11.5) 「변호사법」상 전문변호사 등록제도의 등록요건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전문법률분야의 표시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4) 현행 특성화분야의 재검토 및 확대

현재 각 법전원의 특성화분야는 인가신청 당시 각 법전원이 고민하여 해당 법전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법전원 설치 9년째가 된 시점에서, 인가신청 때 정한 특성화분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또 새로운 특성화분야를 추가할 필요도 있다. 인가신청 당시에 구상했던 특성화 분야가 현실 여건 또는 사회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법전원의 사정에 따라 일정 기간 단위(예를 들어, 5년)로 특성화분야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성화분야의 요건은 법전원 평가기준에 부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5년 주기 법전원 평가시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의 폐지와 그 대안으로 전문법률 과목의 학점이수제가 도입된다면, 인가신청 당시의 특성화분야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굳이 ‘특성화’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각 법전원에서 다양한 전문법률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3. 별론 : 기본법률 과목의 표준교육과정 제시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방안, 즉 ‘선택과목 시험 폐지 및 전문법률 과목 학점이수제 도입’은 ‘기본법률 과목에 대한 교육의 충실성 확보방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법률사무의 수행능력을 검정’하는 변호사시험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법, 민사법 및 형사법 분야 등 기본법률 과목의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도 이들 기본법률 과목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에 따라 법전원 개원 이후 학생들은 기본법률 과목의 수강에 치중하고 있다.

그런데 법전원의 교육과정 및 수강실태를 보면, 기본법률 과목과 전문법률 과목을 비교할 때 기본법률 과목에 과도한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본법률 과목 중에서도 민법 분야에 더욱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행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교육과정 및 수강실태 비중의 차이는 해당 과목들의 중요성과 현실의 법률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그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과목군에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충실하고 균형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학생들은 3년간 9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특정 과목군의 수강에 집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과목군의 수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기본법률 과목 간에도 교육과정 및 수강실태의 불균형이 야기되는 것은,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법전원 교육과정의 내용과 ‘법률사무의 수행능력을 검정’하는 변호사시험의 출제범위 등에 관한 사전 기준 또는 사회적 합의가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발표자의 생각이다. 법전원법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에서는 법률실무기초 과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개별 학교의 자율에 맡기기도 있다. 또 변시법 제9조

(시험과목)에서도 시험과목만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개별 법분야의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출제범위를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적절치도 않다고 본다.

따라서 발표자는 법령보다는 법학교육위원회 또는 변호사시험위원회 등에서 로스쿨 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변호사시험의 출제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기에는 법전원(법전원협의회 포함)과 법조실무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표준교육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준교육과정’에는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표준적인 개설 교과목(수)과 개별 교과목의 교육 범위/수준(표준 실라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표준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수업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률사무 수행능력의 검정’에 꼭 필요한 교육과정의 내용만을 담도록 한다. 이러한 표준교육과정의 내용은 변호사시험의 출제범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변호사시험은 최소한의 ‘법률사무 수행능력의 검정’에 필요한 법률지식만을 시험범위로 한정하고, 법전원에서는 그에 필요한 표준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이수하도록 권장하면 될 것이다.

결국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와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 즉 법률사무의 수행능력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전원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수험을 위한 법률교육을 극복하고, 충실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V. 맺는말

법전원 교육과정이 교육을 통한 경쟁력있는 법조인의 양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각 법전원의 교육과정 내용이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교육과정이 법전원 학생들의 궁극적 목적인 변호사시험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즉, 학생들 입장에서 법전원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수업)을 충실하게 따라가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이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한편, 법전원에서 “복잡다기한 법적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과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법률 과목 이외에 전문법률 과목의 교육과정도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변시 선택과목의 시험은 오히려 전문법률 과목의 정상적 교육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발표자는 전문법률 과목의 정상적 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변시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와 전문법률 과목의 학점이수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은 기본법률 과목의 시험을 통해서 충분히 검정할 수 있으며, 전문법률 과목은 그 영역과 유형이 너무 다양하고 넓어서 시험제도에 포괄하기 어려우며 또 전문법률분야의 전문적 지식은 좁은 의미의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영역에 대한 지식을 함께 요구함으로써 시험제도에 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전문법률 과목을 분야별 또는 영역별로 유형화하여 해당 분야 과목에 대한 일정한 학점수와 학점등급을 취득하는 것을 학위수여 요건 또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법률 과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특성화분야와 연계하여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전문법률 과목의 학점이수제 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당시 중요시했던 학교별 특성화교육의 충실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전문법률 과목의 정상적 교육을 위해서는 기본법률 과목의 시험방법,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엄격한 상대평가 문제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또 법전원에서의 기본법률과목의 표준교육과정도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기본법률 과목의 선택형(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거나, 개별 법전원에서의 학점이수제를 통해서 검정하거나, 최소한 법조윤리 과목과 같이 정기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재학 중에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험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법전원에서 3년간 충실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단순히 지식의 소지 여부를 검정하는 선택형 시험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경청하여야 한다.

둘째, 법조인의 수급구조와 맞물려 있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문제와 개별 법전원의 학사관리에 대한 불신의 결과인 ‘엄격한 상대평가제도’ 문제에 대하여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자격시험으로서 변호사시험의 성격과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법전원의 설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전원에서 충실한 교육을 받고 졸업한 사람들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격 결정방법

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법전원의 정상적 교육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엄격한 상대평가제도’는 직업윤리와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검정하는 변호사시험과 친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셋째, 법학교육위원회, 변호사시험위원회 및 법전원(협의회 포함) 등이 공동으로 변호사시험의 기본법률 과목에 대한 표준교육과정을 만들어 제시하여야 한다. 표준교육과정은 법률사무 수행능력의 검정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담도록 하고, 변호사시험은 표준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 표준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수업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

[별첨]

<표 3> 전문법률과목 개설 및 수강 실태 (2013-2학기, 2014-1학기)

과목	ㄱ(150명)			ㄴ(120명)			ㄷ(120명)			ㄹ(100명)			ㅁ(70명)			ㅂ(50명)			ㅅ(50명)			ㅇ(40명)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1	○		73	○		123	○	○	52			51			22	○		33		○	37	○	○	20
2	○		60		○	48		○	38			39			17	○		21		○	30	○		18
3	○	○	55	○	○	45	○		36			31			11			18		○	18	○	○	18
4	○		54		○	41	○		34	○	○	29		○	10			17	○		15	○		17
5			39			39		○	34			24			9			12		○	13	○	○	17
6	○	○	39			36		○	31	○		21		○	9	○		10		○	11			17
7	○		37			29	○		26	○		19	○		9			10	○		11			16
8			31			24	○		21		○	16	○		8	○		8		○	11	○	○	13
9	○	○	30	○		24		○	21		○	14			8			8		○	10			11
10	○		30			21	○		20	○	○	13			7		○	7	○		9			10
11	○		30			18			16		○	12		○	7			7			8			9
12			30			18	○		13			11	○		7			7			8			9
13			30			13	○	○	13	○		10			7			6			7			9
14	○		25			13			13			10		○	7			6			7			8
15	○		20			11	○	○	12	○		10			7		○	6			7			8
16	○		20			11	○		11	○	○	10	○		7		○	6		○	7			8
17	○		20			10	○		11			9			6			5	○		6			8
18			19	○		10			11	○		9	○		6			5		○	5	○		8
19	○		19			9	○		10	○		9			5	○	○	5		○	5			7
20			17			9			10	○		9	○		4			5	○		5	○		6
21	○		16			9	○		10	○		9	○		3		○	5	○		4			6
22			16			9	○		10			9			3			5			4			5
23	○		16	○		9			9			8		○	1			5			4	○		5
24	○		15			8			9			8		○	1			5			2	○		5
25			14			8	○		8	○		7			0			4	○	○	2			4
26	○		14			7	○		7			7			181		○	4		○	2			4
27	○		13			7			7	○		7				○	○	4		○	2	○	○	4
28			12			7	○	○	4			7				○		3	○		2	○		3
29			12			7			4	○	○	7					○	3		○	1	○		3
30			12			6	○	○	3			6				○		3			1	○		3
31	○		12			6	○	○	3		○	6						2			1			3
32		○	11			6	○	○	3	○		6				○		2			1			0
33		○	10			6			0	○		5				○		2			0			0
34	○		10			5	○		0	○	○	5						2	○		0			0
35	○		10			5			0		○	5						2			0			0
36	○		10	○		5			0	○		4						2		○	0	○	○	0
37			10	○		5	○	○	0		○	4						2		○	0			0
38			9			5		○	0			3						2			0	○		0
39	○		9			5			510	○		3				○		2			0	○	○	0
40	○		8			4				○		2						2			0			0
41	○		8	○		4						2					○	2			0	○		0

42	O		8			4			0		O	2	O		0	O		0
43			7			4			0		O		2		0			0
44	O		6			3		O	0		O		2		0			282
45		O	6			3		O	0				2		0			
46	O		6			3		O	0				2		0			
47	O		6			0			0				2		0			
48	O	O	6			0		O	0			O	2		0			
49			5			0			0		O		2		0			
50	O		5			702			0				2		0			
51	O	O	5						0		O		2		O	0		
52			4						0				2		O	0		
53	O		4					O	0			O	1			0		
54			4					O	0				0	O		0		
55		O	4						0				0			0		
56		O	4						0				0			256		
57	O	O	3						0				288					
58			3						0									
59		O	3						0									
60	O		2					O	0									
61	O		1					O	0									
62			1,017					O	0									
63								O	0									
64									0									
65									0									
66									0									
67									0									
68									0									
68									0									
70									0									
									476									

* 과목명은 숫자로 표기하였음. A: 특성화 과목 여부, B: 외국어강의 과목 여부, C: 실제 수강인원, C줄 마지막 칸: 수강인원 누계

< 참 고 문 헌 >

- 김창록.김종철.이재협,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연구」, 2009.4.
-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2011년 개정판)」, 2011.11.
- 법무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선진 법률문화를 향한 도약입니다」, 2009.3.
- 김용섭, “로스쿨에서의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커리큘럼(교육과정)의 개선과제”, 「법학논집」 제18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12.
- 김창록, “변호사 시험제도의 운영의 적절성”,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향 토론회(자료집)」, 국회의원 이춘석.참여연대 공동주최, 2013.6.24.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2009.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설문”,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 법학전문대학원 현안관련 토론회, 2014.12.5.
-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2004.12.31.
- 송기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향 토론회(자료집)」, 국회의원 이춘석.참여연대 공동주최, 2013.6.24.
- 신동룡,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 장재옥,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의견”, 「변호사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관한 공청회」 주제발표, 법무부, 2010.11.25.
- 정한중,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 토론문”,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향 토론회(자료집)」, 국회의원 이춘석.참여연대 공동주최, 2013.6.24.
- 진흥기, “변호사시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법조」 제654호, 법조협회, 2011.3.

도론

박철 변호사 (법무법인 법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박 철 변호사

(법무법인 법가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청년특위 위원장)

1. 서언

김인재 교수님의 발제문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라고만 함) 졸업생 법조인들과 재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변호사시험(이하 ‘변시’라고만 함) 선택과목에 대한 생각을 통계자료를 통해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낸 것이어서 매우 흥미로웠고, 설득력이 강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자료들을 통해 변시 선택과목 개선방안에 대한 해안을 제시해 주신 김인재 교수님께 법전원 졸업생 및 재학생들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고만 함)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의 발제문을 읽다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첫째, 선택과목 개선방안의 대안으로 제시하신 ‘전문법률분야의 최저 이수학점 설정’에 대한 설명 중, ‘전문법률분야 과목에서 일정 수의 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일정 등급의 학점 취득을 요구할 필요’에 대하여

교수님께서서는 법전원의 정상적 교육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엄격한 상대평가제도’는 직업윤리와 법률사무수행능력을 검정하는 변시와 친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셨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글 전반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변시 선택과목 실시의 대안으로 제시하신 ‘전문법률분야 최저 학점 이수’방안에서 “일정학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하는 것이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변시와, 법전원제도의 취지와는 배치되는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3년의 교육과정 기간 중, 기본이 되는 7법을 학습하는 절대적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상황에서 자칫 전문법률분야에 대한 과도한 시간투자를 원생들에게 강요하게 되는 꼴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또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물론 교수님들의 원생들에 대한 성적평가가 매우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 즉 국민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임을 생각할 때, 그리고 전국의 25개 법전원 재학생들에 대한 평가로서 공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국 재학생들에게 단일화 된 평가방법이 공시되고 그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수님께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3. 둘째, 변시 선택과목에 대한 대안으로 ‘4학기 이수자에 한하여, 연 2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서, 절대평가방식의, 사례형 시험’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토론회에 참석을 준비하면서 대한변협 연수팀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이라고 함)의 도움으로 2017. 4. 6.부터 2017. 4. 10.까지 법전원 출신 4, 5기 변호사(변시 4, 5회) 및 6회 졸업생(6회 시험), 7회 재학생(현 3학년)을 상대로 변시 선택과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별첨 참조).

변시 4, 5회 합격 변호사(최근 변호사시험 응시한 이들로 선택과목의 개선방향 등에 대한 명확한 견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4, 5회 합격자들로 한정하였음)들의 경우 별첨자료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61명의 응답자 중 51명(19.5%)이 현행제도 유지, 83명(31.8%)이 폐지, 122명(46.7%)이 제도 수정 내지 개선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6기 졸업생의 경우 283명이 응답하여 18.6%이 현행제도 유지, 40.7%이 폐지, 39.6%이 제도수정 내지 개선의 의견을, 7기 재학생의 경우 588명이 응답하여 13.6%이 현행제도 유지, 52.1%이 폐지, 32.5%이 제도수정 내지 개선의견이었습니다(다만 6. 7기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는

세부 설문문항의 오류가 있어 조사 자료를 첨부하지 않음).

직접 법전원 제도를 경험했고, 변시를 치르고 합격한 변호사의 경우 67.2%, 즉 2/3를 넘는 수가 어떤식으로든 시험으로서의 선택과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6기의 경우 60.4%).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시험폐지와는 매우 배치되는 견해인데 법전원 출신들로서는 시험으로서의 선택과목이 법전원제도 도입의 취지, 전문법률분야에 대한 학습에 대한 필요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

4. 맺음말

법전원 졸업생으로서, 또 실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전원제도의 취지에 매우 공감하고, 그러한 교육 목적, 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로스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사람의 경우 무난하게 변호사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변시가 자격시험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변시의 자격시험화는 적정한 법조인 배출수와 현실적으로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별론이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조정의 문제가 남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대한 논의도 결국 그러한 최종목표를 이루기 위한 문제해결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발제문 곳곳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변시는 법전원을 사법시험 하의 고시학원과 마찬가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졸업생들도 재학생들도 쉽게 공부해서, 쉽게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에 반대합니다. 3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변호사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공부가 얼마나 많은 분량이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투여되어야 하는 수준인지 겪어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논의가 법전원 교육의 개선을 위한, 좋은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변화를 갈망하는 한 발자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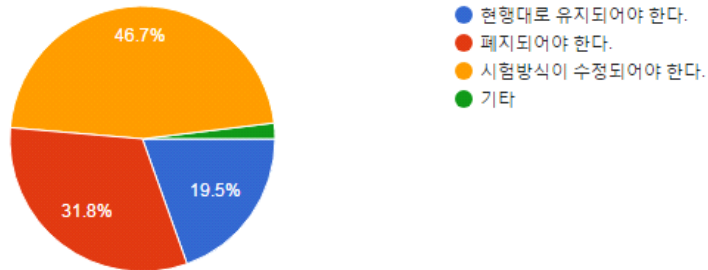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별첨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설문조사 응답결과(총 26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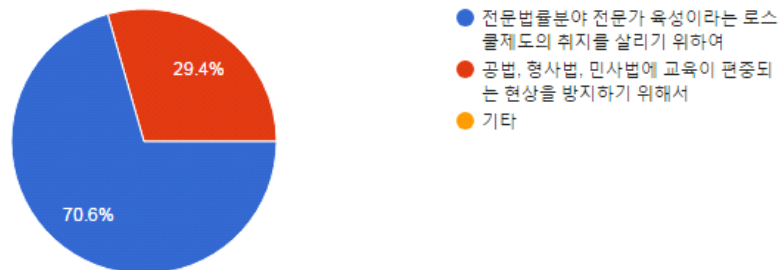
대상 : 제 4, 5회 변시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조사기간 : 2017. 4. 6. ~ 2017. 4. 10.

1. 귀하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응답 26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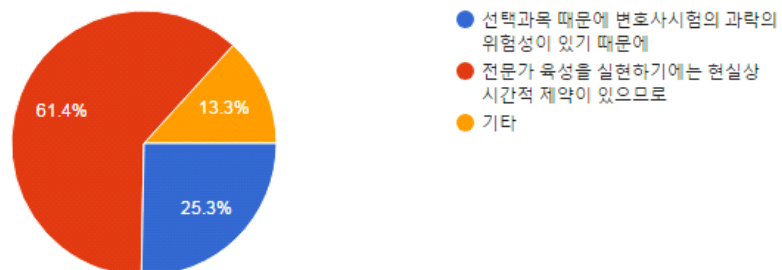
현행유지

1-2.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5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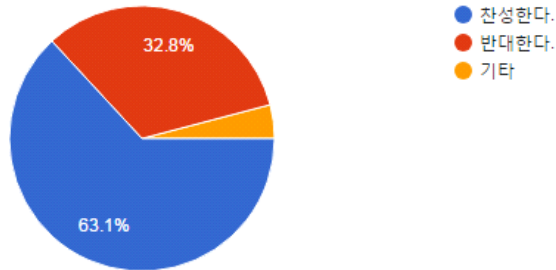
폐지

1-2.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8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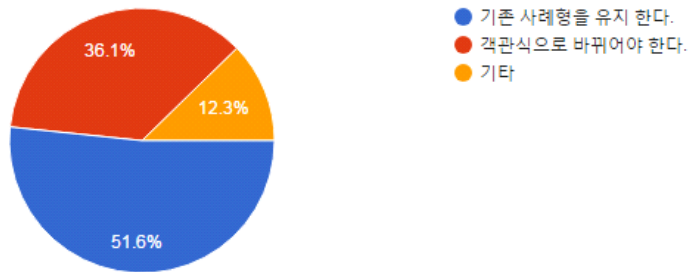
2. 시험방식이 수정되어야 한다면, 4학기 이수자에 한하여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각 1회씩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방법(법조윤리시험과 같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화)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응답 12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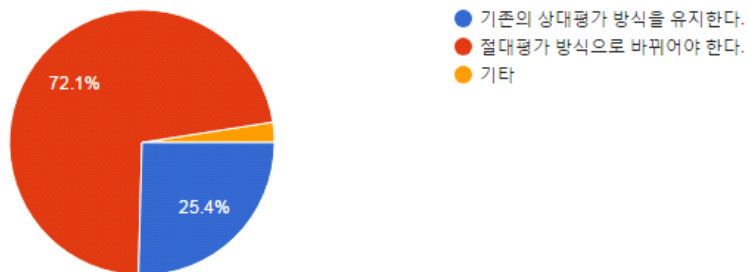
2-1. 시험방식이 수정되어야 한다면, 시험 문제의 형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응답 122개)



2-2. 시험방식이 수정되어야 한다면, 시험 평가의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응답 122개)



토론

임순현 기자 (연합뉴스 사회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임순현 기자
(연합뉴스 사회부)

<표>=각 법전원별 특성화 과목

국제법무, 국제상거래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제주대
기업법무, 중소기업법무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아주대
공익인권, 공공거버넌스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전남대
의료·과학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해운통상, 물류	부산대, 인하대
금융, 기업금융	부산대, 서울대
환경법	강원대
부동산 관련법	건국대
IT법	경북대
조세	서울시립대
지재법	인하대
동북아법	전북대

1. 선택과목 응시율과 특성화과목의 불협화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은 송무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특성화 교육제도와 함께 논의돼야 할 문제일 것이다. 선택과목 시험을 통해 다양한 전문분야의 배경지식을 갖는 변호사들을 얼마나 많이 배출해내느냐에 따라 특성화 교육제도의 성패가 달렸다.

-당연히 선택과목 시험은 각 법전원들이 특성화 교육을 평가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다. 선택과목 시험과 특성화 교육을 유기적인 연결체계를 갖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김인재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선택과목 시험과 특성화 교육은 상당히 유리돼 있다. 응시율이 가장 높은 국제거래법의 비중은 약 43%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거래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특성화 분야인 국제법무와 국제상거래를 선택한 법전원은 전체 25개교 중 고려대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제주대 5곳(20%)에 불과하다. 역시 28~30%의 응시율을 보이는 환경법도 강원대 단 한 곳(4%)만이 특성화 과목으로 선택했다.

-이외 3%대의 응시율을 보인 지적재산권법은 인하대, 2%대 응시율을 보인 조세법은 서울시립대가 각각 특성화 과목으로 선택한 상황이다. 반면 14%대 응시율인 노동법과 7% 응시율인 경제법, 3.3% 응시율인 국제법을 선택한 법전원은 한 곳도 없었다.

-국제거래법이 선택과목과 특성화 분야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비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14%대의 높은 응시율을 보인 노동법의 경우 단 한 곳도 특성화 분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할 양 제도가 상당히 유리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많은 법전원들이 특성화 분야로 선택한 공익인권법이나 의료법, 기업법무 등은 변시 선택과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전원 교육정책이 선택과목과 특성화 분야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특성화 교육 현주소는?

-2010년 조사에 따르면 법전원 당 특성화과목 담당 교수는 2.52명에 불과했다. 이는 보통 20~30명씩 특성화분야 전담교수를 두고 있는 미국의 로스쿨들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수치다. 특성화 담당 교수가 아예 없는 곳도 4곳이었다. 구체적인 통계 조사는 없었지만, 특성화 담당교수 현황은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성화 교육 형해화의 가장 큰 원인은 변호사시험에 주력하는 법전원 교육 정책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법전원의 평가가 좌우되는 현재의 교육 여건 속에서 특성화 과목을 앞세운 법전원별 특화 교육은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법전원들은 특성화 과목을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배정했고,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자연스럽게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특성화 교육의 실패는 곧바로 특성화 전담 교수들의 법전원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정책의 실패가 학생들의 외면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전담 교수들의 이탈로 번지면서 특성화 과목 형해화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3. 선택과목 시험 폐지가 답인가?

-그렇다면 선택과목 시험 폐지가 답일까? 선택과목 시험 폐지는 곧 법전원의 특성화 과목 교육의 포기를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전문 배경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

-변호사시험은 현재도 민법과 형법, 헌법 위주의 실시되고 있어, 기존 사법시험과 크게 차별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과목 시험까지 폐지하는 것은 변호사시험을 도로 사법시험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택과목 시험 폐지 및 특성화 과목 교육 포기는 점차 전문성을 토대로 분화되고 있는 변호사업계의 실무 현황과도 맞지 않다. 변협이 도입한 전문변호사등록제도에 많은 청년 변호사들이 관심을 갖고 등록을 신청하고 있다. 변호사의 전문성은 곧 변호사시장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다.

-뿐만 아니라 특성화 교육제도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법전원들의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 경쟁력있는 특성화 분야를 내세워 유능한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변호사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선택과목 시험 폐지에 앞서 법전원의 특성화 교육을 점검하고 되돌아볼 필요 있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이 법전원 학생들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적당하지 않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지 폐지할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평가시험으로 재구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성화 교육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도론

홍석모 원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홍석모 원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원장님께서 좋은 발표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광범위한 조사, 다양한 자료와 깊이 있는 데이터를 제시한 설득력 있는 내용의 발표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김원장님의 모든 발표 내용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이며, 토론자의 입장에서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점과 좀 더 명료한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국제거래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거래법에 수험생들이 몰리는 현상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한 발표자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일단 수험 준비 양에 있어서 국제거래법의 경우 법전으로 보면 25쪽 정도 됩니다. 조세법의 경우 700쪽, 노동법의 경우 300쪽 정도 됩니다. 학생들이 실무에 진출하여 국제거래법 관련 분쟁을 다루게 될 확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거래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43%에 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문제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실무에 진출한 후 전문분야로 선택하게 될 분야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선택과목 시험은 변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라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힘들게 치러야 하는데, 약간의 실수라도 하게 되면 선택과목 과락으로 변시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꽤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법률과목을 잘해도 선택과목에서 과락을 하게 되면 1년을 더 공부해야 하는 현 변시 제도는 “직업윤리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택과목 시험으로 인해 로스쿨 교육이 왜곡되고, 학생들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저도 선택과목 시험 폐지에 찬성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선택과목 시험 폐지의 대안으로, 전문법률분야를 유형화하여 학생들이 전문 법률분야를 1~2개 선택하고, 그 분야에서 3~4개의 과목을 듣게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강원대의 경우 환경법을 특성화로 정하여 세분의 교수님이 환경법 분야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환경법 특성화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법 분야에서 4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환경법 특성화 인증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법 분야를 제외하면 다른 분야를 담당하는 교수님들은 각 한분 정도이므로 전문법률분야로 유형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거의 환경법 분야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다른 선택과목이 고사 상태에 처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전문법률분야를 유형화하여 그 분야의 과목을 집중해서 듣게 하기보다는, 선택과목으로 분류된 과목 중에서 분야에 관계없이 4과목 이상을 듣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들으면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과목 수강시 상대평가를 실시하면서 B 또는 C학점 이상을 받아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기존 학점을 얻지 못한 경우 다른 과목을 추가로 더 수강해야 하는데, 학점이 계속 안나오는 경우에는 계속 추가로 더 들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평가로 변경할 경우에는 담당 교수님들이 학점을 너무 후하게 주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현재처럼 상대평가만 실시해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취업 등의 이유로 전체 학점을 높여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경쟁적으로 열심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기본법률과목의 선택형 문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현재 시험 과목이 너무 많고 범위도 넓어서 학생들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모든 선택형 문제를 일시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헌법, 민법, 형법에 대해서는 선택형 문제를 유지하되,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선택형 문제를 폐지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법률과목의 표준교육과정을 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최신 판례에 치중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학생의 입장에서는 계속하여 최신 판례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엄격한 상대평가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폐지하면 학점을 후하게 주는 학점 인플레이션이나, 학교간 학점 잘주기 경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점이 취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현 상황에서 A학교가 학점을 잘주면 그 경쟁 학교에서도 학점을 잘 주게 되고,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퍼지면 모든 학교가 학점을 잘 주게 되어, 결국 로스쿨 학점은 믿을게 못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법전원이 통일된 기준하에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이며, 단지 그 기준을 지금보다는 덜 엄격하게 하는 것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발표자님의 좋은 발표에 감사드리며, 아직 법전원의 교육과 변호사시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토론

종 합 토 론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전문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선택과목 시험은 ‘어떤 과목을 공부하면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가’에 치중하고 있지, ‘사회적 수요’나 ‘법률 시장에 나가서 어떤 전문 법률가가 될 것인가’와는 동떨어진 시험 제도가 되고 있다.

선택과목 시험을 이수제로 변경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3과목 정도만 들으면 인정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또 7가지 과목의 시험이지만, 금융법 등의 분야도 얼마든지 선택과목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 본다. 일정한 과목의 이수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김창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와 학점이수 방식에 찬성한다. 선택과목 시험은 과목마다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난다. 변리사 자격증을 가진 로스쿨 학생들 지적재산권법은 선택하기 힘들어 한다.

개인적으로는 학점 이수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몇 과목을 한정해놓고 ‘이 과목을 이수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금융법, 의료법 등 중요한 분야들이 많지만,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준비를 하느라 어떤 분야를 전공하면 좋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다. 홍석모 원장님 말씀대로 20~30가지 과목을 전문법률 과목으로 정해놓고, 그 중에서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4개 정도 듣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면 학생 스스로 본인의 장래에 대해서 폭 넓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희성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인재 원장님의 발표와 토론자 분들의 발표를 잘 들었다. 오랫동안 생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원장님들께서 같은 생각일 것이고, 지금이야말로 처음부터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로스쿨을 설립할 때 취지가 무엇이었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작했다. 그런데 정작 교육을 통한 법조인이 양성되고 있는가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사법시험 시절 노동법 강의를 할 때에는 노동법 배경부터 시작해서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로스쿨 체제에서는 사법시험 시절보다 훨씬 더 할 일이 많아졌고, 학생들의 수험 부담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수업 부담이 많이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한다. 다만 학점을 어느 등급 이상 이수해야 한다는 것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락을 맞지 않는 이상, 즉 ‘몇 학점 몇 과목 이상 이수’하면 인정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학점으로 평가한다면 오히려 학생들의 수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정말 필요한 과목들이 특성화 과목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각 학교에서 중복되는 것들을 제외하면 12과목 정도가 된다. 12과목 중 시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태반이다. 이는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과목들을 시험 대신 과목으로 이수하게 한다면, 충분히 그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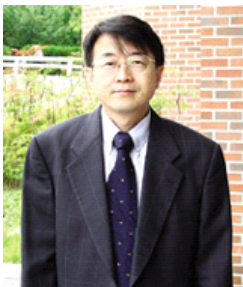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공청회에 참석하기 전에 부산대 법전원 교수님들에게 의견을 받았다. 큰 방향에서 시험을 폐지하고, 과목 이수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한분도 없었다. 오히려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현 상태로는 시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논의가 빠른 시일 내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과목 이수제로 했을 때 ‘전문 과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내 생각에는 전문 과목을 다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협의회에서 전문 과목에 대한 공동 기준을 정하고, 그 공동 기준 하에서 5-6개 과목 정도를 학교에서 전문 과목으로 선택하면, 학생들이 3과목 정도 이수하면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요건은 B학점 이상 이라는 등의 학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과목을 이수한다는 것 자체가 시험에서 과락을 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권오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선택과목 시험은 폐지하고, 학교에서 학점이수를 통해서 인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개선과 보완을 통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수업 이수와 더불어 실습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예를 들어 ‘노동법’을 선택하면 노동법과 관련된 실습을 하고, ‘환경법’을 선택한 학생은 환경관련 현장에서 실습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론과 실무가 합쳐져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에도 사법시험과 차별화된다고 느낄 것이고, 무엇보다 로스쿨의 취지인 ‘교육을 통한 양성’에 보다 더 접근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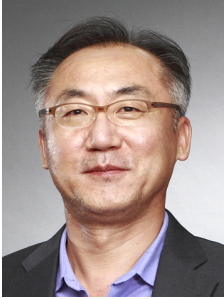


김정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전문화와 특성화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단순히 시험에 응시했다고 전문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박철 변호사가 이야기 한 부분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로스쿨 3년을 다니면서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기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선택과목을 학점 이수제로 바꾼다고 해서 전문화가 될 것인가 의문이 든다.

요즘은 학생들이 2학년 겨울 방학부터 변호사시험을 준비한다. 즉 로스쿨 3년 중에서 1년 동안을 변호사시험을 위해 투입되는 상황이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합격률이 50%대까지 떨어진 지금, 특성화에서 더 강화된 전문성 강화를 이야기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법률가로서 기본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 헌/민/형 이라는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노동법이든 의료법이든 다양한 수업을 듣고 법률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문제를 ‘전문성 강화’라고 하면 너무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선택과목 시험 대신에 학교에서 과목 수강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그룹핑(Grouping)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예를 들어 노동법이면 ‘노동법’으로 못 박지 말고, 노동법과 연관된 사회법, 사회노동법, 복지법 등 다양한 과목들을 그룹핑 해 두고, 학생들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강하는 식이다.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공청회에 참석하기 전에 교내 교수님 11분에게 답을 받았는데, 10분은 이수제에 찬성하고, 다른 한분은 겨울방학 또는 여름방학 때 수강해서 P/F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을 주셨다. 학생들의 현실을 보면 헌/민/형 기본 과목을 포함해서 실무 기본 과목 등을 포함해 90학점 이상을 들어야 졸업 이수학점이 된다. 선택과목 수업을 듣지 않는 까닭은 시험 보는 데 어차피 크게 시간을 투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선택과목 이수제로 하게 되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본법 과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위 전문화가 법전문 교육에서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솔직히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늘려주는 과정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차라리 학생들이 향후 전문 과목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여러 과목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의 수를 줄이고 기록형도 없애지 않는 이상, 오히려 과목 이수제로 하는 것은 학생들의 불만만 야기할 것이다. 선택과목의 경우 방학 때 특강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능했는데, 수업을 이수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과 불만만 커질 것이다.



김현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기 때문에,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하는 대신에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점 이수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선택과목 시험과 특성화를 연계시켜서 총 이수 학점의 1/3 이상을 이수하라고 한다면, 학생들에게 약간의 부담은 있겠지만 특성화 과목과 전문법률과목이 제대로 이수되어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동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합격률이 5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거나 과목을 개선할지라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선택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로스쿨 입학 목적이 변호사가 되기 위함이었고, 변호사시험 합격이 최고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연 선택과목을 시험으로 놔둔 채 지금처럼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폐지를 하고 교육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할 때이다.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방법도 있다. 기록형 시험의 경우 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연수를 통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또 기본 교과목의 표준화 등은 자격시험화로 가기 위한 단계이므로 보완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오식 원장님의 사회, 김인재 원장님의 발제, 홍석모 원장님, 박철 변호사, 임순현 기자님 모두 토론을 아주 잘 해주셨고, 원장님들의 열띤 토론도 감사드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오늘의 토론을 바탕으로 선택과목을 시험으로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수제로 갈 것인가 논의할 것이다. 또 이수제가 전문성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바람직한 방향을 건의하고 법령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무쪼록 학생들의 시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로스쿨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과목 및 정원

NO	학 교 명	원 장	정원	특성화 과목
1	강 원 대	홍 석 모	40	환경법
2	건 국 대	권 중 호	40	부동산 관련 법
3	경 북 대	권 오 결	120	IT법
4	경 회 대	정 형 근	60	글로벌기업법무
5	고 려 대	김 규 완	120	GLP(국제법무)
6	동 아 대	이 중 근	80	국제상거래법
7	부 산 대	차 정 인	120	금융·해운통상법
8	서 강 대	장 덕 조	40	기업법(금융법)
9	서 울 대	조 흥 식	150	국제법무, 공익·인권법, 기업·금융법
10	서 울 시 립 대	정 병 호	50	조세법
11	성 균 관 대	최 봉 철	120	기업법무
12	아 주 대	이 준 섭	50	중소기업법무
13	연 세 대	김 정 오	120	공공거버넌스와 법, 글로벌비즈니스와 법, 의료·과학기술과 법
14	영 남 대	김 창 희	70	공익·인권법
15	원 광 대	이 희 성	60	의생명과학법
16	이 화 여 대	강 동 범	100	생명의료법, 젠더법
17	인 하 대	김 인 재	50	물류법, 지적재산권
18	전 남 대	송 오 식	120	공익·인권법
19	전 북 대	김 동 근	80	동북아법
20	제 주 대	김 현 수	40	국제법무
21	중 앙 대	이 중 영	50	문화법
22	충 남 대	명 재 진	100	지적재산권
23	충 북 대	이 재 목	70	과학기술법
24	한 국 외 대	최 완 진	50	국제지역법조인양성
25	한 양 대	이 형 규	100	국제소송법무, 지식·문화산업법무, 공익·소수자인권법무